

접 수	의안과 - (20 . . . .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청소년들의 선거의식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6년 2월 16일

청 원 인

성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건명	청소년들의 선거의식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2월 16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유흥준외 16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의원입니다. 제 18회 임시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lt;청소년의 선거의식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gt;입니다.</p> <p>최근 갈수록 낮아지는 투표율에 가장 큰 원인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선거’의 참여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은 아직 막 어른이 된 20대가 제대로 된 선거의식이 함양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선거의식을 키워 훗날 어른이 되었을 경우 올바른 정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요구합니다.</p> <p>청소년 의회에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p> <p>교육기본법</p> <p>제 30조(선거교육)</p> <p>①선거 교육은 그 목적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선거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에 있음을 명시한다.</p> <p>②교육 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10학년 이상의 청소년 혹은 국가로부터 그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p> <p>③선거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용해 진행하되, 관련 사항은 해당 학교장 재량으로 한다.</p> <p>④한 학기에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한다.</p> <p>⑤중등교육기관의 사회과목 교사 중 40시간이상의 관련 연수를 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p>	

소 개 의 원

인

# 청원서

## 1. 제안이유

2016년 2월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참여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는 실정입니다. 중간중간 일시적인 상승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대선의 경우 46%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1회 대선에 비해 약 50%가량 하락한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입시위주 현황에서는 청소년들이 선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힘듭니다.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도 처참한 수준입니다. 사회탐구 과목 중 하나인 <법과 정치>도 학생들에겐 그저 외워야 할 암기과목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이어서야 현재의 하락세를 전환 시키는 것은 가능성을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청소년들의 선거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에서 우리는 청소년들을 위한 선거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장래에 활발한 투표참여를 유도하여, 정치 참여를 통한 민주의식 계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2. 주요골자

현행 교육기본법에 제 30조(선거교육)을 신설한다.

### 제 30조(선거교육)

- ①선거 교육은 그 목적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선거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에 있음을 명시한다.
- ②교육 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10학년 이상의 청소년 혹은 국가로부터 그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
- ③선거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용해 진행하되, 관련 사항은 해당 학교장 재량으로 한다.
- ④한 학기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한다.
- ⑤중등교육기관의 사회과목 교사 중 40시간이상의 관련 연수를 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신설
제 29조(국제교육)  ①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교육에 노력하여야한다.	제 30조(선거교육)  ①선거 교육은 그 목적이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선거의식을 함양하고 나아가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에 있음을 명시한다.

②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 필요한 교육 또는 사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한다.

③국가는 학문연구를 진흥하기 위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해와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야한다.

④국가는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등과의 교육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추가>

②교육 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10학년 이상의 청소년 혹은 국가로부터 그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 한다.

③선거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이용해 진행하되, 관련 사항은 해당 학교장 재량으로 한다.

④한 학기에 한 번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연 2회 실시하도록 한다.

⑤중등교육기관의 사회과목 교사 중 40시간이상의 관련 연수를 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청원인 성명 :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

---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